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………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
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2016.3.15.(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3일

(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원장 차선세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기존 [별지 서식]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[별지 제1호서식]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○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에 따라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

계	팀장	과장	국장	원장	결 재

1. 시설명	대강당, 소강당					
2. 사용일시	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					
3. 사용 예정인원	명					
4. 사용 목적						
5. 사용자(개인 또는 단체)						
주소				단체명		
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대표전화		
6. 사용자납부						
사용료						
년 월 일 신청자주소 : 성 명 : (서명날인)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----- 시설물 사용허가 승인서 1. 시설명 : 2. 사용일시 : 년 월 일 시 ~ 월 일 시까지						
사용료	원	특기사항				
위와같이 대강당, 소강당 사용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직인 신청인 귀하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)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6.>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8.6.>